
환급 초보 탈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손에 잡히는 환급심사 사례집

오류



- 「손에 잡히는 환급심사 사례집」은 최근 환급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오류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이는 기업 등 환급신청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오류 사례를 알림으로써 같은 오류 발생을 예방하고, 환급 심사자의 전문성을 높여 신속·정확한 환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환급사례집을 통해 환급심사의 전문성 향상과 수출기업의 원활한 환급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본 사례집의 내용이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관세환급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소요량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등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CONTENTS

I 품목분류 오류

1. 환편기용 바늘의 품목분류 오류	2
2. 의료용 레이저기기 다관절의 품목분류 오류	3
3. WELDING용 산업용 로봇의 품목분류 오류	4
4. 철강 소재 볼트의 품목분류 오류	5
5. LED 램프의 품목분류 오류	6
6. SLITTER LINE 구성요소의 품목분류 오류	7
7. VALVE SPARE PARTS의 품목분류 오류	8
8. 스테이플섬유 혼방 염색직물의 품목분류 오류	9
9. 철강제 기타 제품의 품목분류 오류	10

II 환급신청인 오류

1. 비제조물품의 간이정액환급(1)	12
2.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의 간이기납증 발행 오류	13
3. 비제조물품의 간이정액환급(2)	14
4. 간이정액환급 신청인 적격 여부 심사 정보 제공	15
5. 비제조물품의 간이정액환급(3)	16

III 수출금액 오류

1. 용역비용을 수출금액으로 산정한 오류	18
2. 환급이후 수출신고 내역 정정(1)	19
3. 환급이후 수출신고 내역 정정(2)	20

IV 소요량 오류

1. 동일 모델의 원재료 적용 착오	22
2. 수출물품 제품식별번호 입력 오류	23
3. 환급대상 수입원재료 적용 오류	24
4. 단위소요량 과다 산정 및 부산물 미공제	25

V 조정고시 오류

1. 조정고시 대상 수입원재료의 고시 적용 오류	28
----------------------------	----

VI 기라 오류

1. 덤핑방지관세 공제비용 신고하였으나 공제 안 함	30
2. 환급에 사용된 수입신고서 정정으로 과다환급 발생(1)	31
3. 수출신고 물량과 환급신청 물량의 불일치(1)	32
4. 재수입된 수출물품을 환급에 사용하여 과다환급 발생	33
5. 환급에 사용된 수입신고서 정정으로 과다환급 발생(2)	34
6. 환급에 사용된 수입신고서 정정으로 과다환급 발생(3)	35
7. 환급에 사용된 수입신고서 정정으로 과다환급 발생(4)	36
8. 수출신고 물량과 환급신청 물량의 불일치(2)	37
9. 원상태 환급의 수출 품명과 원재료 품명 불일치	38
10.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제외 물품(수탁가공)	39
11. 수입원재료 고세율 정정으로 인한 총당 조치	40
12. 수입원재료 단위 세액 계산 착오	41

I

품목분류 오류

- 1 환편기용 바늘의 품목분류 오류
- 2 의료용 레이저기기 다관절의 품목분류 오류
- 3 WELDING용 산업용 로봇의 품목분류 오류
- 4 철강 소재 볼트의 품목분류 오류
- 5 SLITTER LINE 구성요소의 품목분류 오류
- 6 LED 램프의 품목분류 오류
- 7 VALVE SPARE PARTS의 품목분류 오류
- 8 스테이플섬유 혼방 염색직물의 품목분류 오류
- 9 철강제 기타 제품의 품목분류 오류

01

환편기용 바늘의 품목분류 오류

심사 착안

- 수출물품 환편기바늘(Knitting niddles)



품목번호 및 간이정액환급률 체계

	신고 품목번호	해당 품목번호
구분	Hosiery needles (8448.51-1000)	기타 (8448.51-9000)
간이환급률	10원/10,000원	0원/10,000원

- 동일 물품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인지 후 확장심사한 사례임

주요 오류 내용

- 업체는 수출 품목인 Knitting niddles을 8448.51-1000(메리야스용 바늘)로 신고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간이환급 받음
-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양말이나 스타킹을 ‘호저’, 이를 제조하는 기계인 양말 편직기용 바늘을 호저리 바늘(Hosiery needles) 또는 메리야스용 바늘이라 칭하는데, 메리야스용 바늘은 8448.51-1000(10원)로 특게되어 있고 수출물품인 환편기바늘은 8448.51-9000(기타바늘, 0원)로 분류되어 있어 간이정액환급률 차이에 따른 과다 환급 발생

조치사항

- 과거 환급받은 건 확장심사 실시하여 30건 수작업선별
⇒ (추징세액) 관세 10,931,380원, 환급가산금 1,039,550원

02

의료용 레이저기기 다관절의
품목분류 오류

심사 착안

- 수출물품 의료용 레이저 기기 다관절(ARM)



품목번호 및 간이정액환급률 체계

	신고 품목번호	해당 품목번호
구분	기타 전기기기의 부분품 (8543.90-9090)	적외선 응용 레이저기기의 부분품 (9018.20-9000)
간이환급률	70원/10,000원	0원/10,000원

- 최초수출업체로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품명, HS로 분류 사례를 검색한 결과 품목분류 오류 확인

주요 오류 내용

- 업체는 의료용 레이저 기기 다관절 ARM(8543.90-9090, 기타의 전기기기)을 제조하여 최초 수출 후 간이정액환급을 받음(2건)
- 품목분류 사례 및 관세율표 해설서 검토 결과, 해당 수출물품은 기타 전기기기의 부분품(8543.90-9090, 7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적외선 응용 레이저기기의 부분품(9018.20-9000, 0원)으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하여, 간이정액환급률 변동으로 인한 과다환급 발생

조치사항

- 확장심사 실시, 1건 추가 수작업선별하여 총 2건 추징
⇒ (추징세액) 관세 3,883,210원, 환급가산금 2,740원

03

WELDING용 산업용 로봇의
품목분류 오류

심사 착안

- 수출물품 산업용 로봇(WELDING EQUIPMENT)



품목번호 및 간이정액환급률 체계

	신고 품목번호	해당 품목번호
구분	기타의 산업용 로봇 (8479.50-9000)	점 용접기기 로봇형 (8515.21-1010)
간이환급률	100원/10,000원	70원/10,000원

- 수출물품 품명인 welding용 산업로봇을 품목분류표에 확인한 결과, 신고세번인 기타의 기타 기계로 분류하지 않고 다른 세번으로 특게되어 있는 것에 착안함

주요 오류 내용

- 업체는 산업용 로봇인 WELDING EQUIPMENT(8479.50-9000, 기타의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여 수출 후 환급받음
- 신고세번인 기타의 산업용 로봇(8479.50-9000)은 용접·절단·페인팅 등과 같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용 로봇을 분류함. 해당 수출물품은 차체부품 용접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된 용접용 산업 로봇으로 해당 품명이 특게된 8515.21-1010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품목분류 착오로 인한 과다환급 발생

조치사항

- 추징조치 ⇒ (추징세액) 관세 5,115,130원, 환급가산금 220,970원

04

철강 소재 볼트의 품목분류 오류

심사 착안

- 수출물품 철강 소재 볼트(Riser Pipe Hyd Pin)



품목번호 및 간이정액환급률 체계

	신고 품목번호	해당 품목번호
구분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관연결구 (7307.29-0000)	기타의 기타 관연결구 (나선가공한 것) (7307.99-1000)
간이환급률	140원/10,000원	90원/10,000원

- 철강 소재 볼트로 규격 상 수출물품의 품명이 다른 데 동일한 HS로 신고된 점, 소재에 따라 경합세번 간 간이정액환급률이 달라 정밀 심사한 사례임

주요 오류 내용

- 해당 업체는 해양 석유 시추관의 메인 파이프관을 주변 작은 유틸리티 관과 연결해주는 볼트를 제조하여 수출 후 환급 받음
- 해당 수출물품은 스테인레스 계열의 소재인 Riser Pipe Hyd Pin(7307.29-0000)과 단조강 소재인 Riser Pipe BST Pin(7307.99-1000) 두 가지로, 소재에 따른 세번과 간이정액환급률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세번으로 수출신고하여 간이정액환급 받음으로써 과다환급 발생

조치사항

- 추징조치 ⇒ (추징세액) 관세 130,080원, 환급가산금 50원

05

SLITTER LINE 구성요소의 품목분류 오류

심사 착안

- 수출물품 산업용 로봇(ROBOT KNIFE CHANGE)



품목번호 및 간이정액환급률 체계

	신고 품목번호	해당 품목번호
구분	제8456호~제8465호 기계의 전용 부분품 (8466.93-9000)	기타의 따로 분류하지 않는 기계류 (8479.89-9090)
간이환급률	40원/10,000원	10원/10,000원

- 수출물품은 SLITTER LINE 구성요소 중 ROBOT KNIFE CHANGE로 KNIFE 세팅용 산업용 로봇이 기계 부분품으로 신고된 것에 착안함

주요 오류 내용

- 해당 업체는 SLITTER LINE 장비*를 수출하며, 해당 수출물품은 SLITTER LINE에 공급되는 철판을 주어진 규격으로 절단하기 위하여 절단에 쓰이는 KNIFE들을 자동 세팅하는 ROBOT 설비임

* UNCOILER(롤상 철판 코일을 푸는 공정), SLITTER LINE(절단 공정) RECOILER(롤로 되감는 공정), CONTROL PANEL로 구성

-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용 로봇을 기계의 전용 부분품인 8466.93-9000(40원)으로 잘못 분류하여 전액 추징함. HS에 대한 이견이 있어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예정임

조치사항

- 추징 조치 ⇒ (추징세액) 관세 3,935,100원, 가산금 7,500원

06 LED 램프의 품목분류 오류

심사 착안

- 수출물품 LED 램프(LED BULBS)



품목번호 및 간이정액환급률 체계

	신고 품목번호	해당 품목번호
구분	그밖의 필라멘트 램프 (텅스텐 할로겐의 것) (8539.21-0000)	발광다이오드 램프 (8539.52-0000)
간이환급률	100원/10,000원	20원/10,000원

- HS4단위가 같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간이정액환급률이 다를 수 있음에 착안하여 동일 품목군에 대한 품목분류 검토로 과다 환급 추정한 사례임

주요 오류 내용

- 해당 업체는 전구를 제조하는 간이정액환급 업체로,
- 텅스텐 할로겐 필라멘트 램프(8539.21-0000)와 LED 램프(8539.52-0000)는 세번과 간이정액환급률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세번으로 수출신고하여 간이정액환급 받음으로써 과다환급 발생

조치사항

- 확장심사 실시하여 총 16건 추정
⇒ (추징세액) 관세 12,504,180원, 환급가산금 701,250원

07 VALVE SPARE PARTS의 품목분류 오류

심사 착안

- 수출물품 CONTROL VALVE BODY



품목번호 및 간이정액환급률 체계

	신고 품목번호	해당 품목번호
구분	CONTROL VALVE (8481.10-0000)	부분품 (8481.90-0000)
간이환급률	100원/10,000원	50원/10,000원

- 수출신고서의 품명·규격과 환급신청내역의 품명·규격을 대조한 결과 수출신고서의 품명이 부분품(SPARE PARTS BALL)임에도 불구하고 완제품 세번으로 신고하여 간이정액환급 세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착안하여 심사한 사례임

주요 오류 내용

- 해당 업체는 수출품목인 CONTROL VALVE를 제조하여 수출한 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였으나,
- 환급신청한 건 중 일부 수출품목이 부분품임에도 불구하고 완제품 세번으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과다환급 발생

조치사항

- 과다환급된 금액만큼 추징 조치 ⇒ (추징세액) 관세 70,480원

08

스테인플섬유 혼방 염색직물의
품목분류 오류

심사 착안

- 수출물품 Woven fabrics of synthetic staple fabrics



품목번호 및 간이정액환급률 체계

	신고 품목번호	해당 품목번호
구분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 중량 85% 이상의 염색직물 (5512.19-1000)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합성스테이플 직물 (5515.12-9000)
간이환급률	140원/10,000원	10원/10,000원

- 직물류는 섬유 함유량에 따라 품목분류 및 간이정액환급률이 결정되므로
경합세번* 간 간이정액환급률 차이를 확인하여 심사한 사례

* 5407.61-2000(90원)&5407.69-2000(40원), 5903-20-0000(30원)& 5903.90-0000(90원)



주요 오류 내용

- 해당기업은 스테이플섬유를 제조·수출하여 간이정액환급을 받는 업체임
- 수출물품인 100% polyester woven fabric은 스테이플섬유(중량 63%)와
필라멘트사(37%)로 직조한 염색직물임. 해당물품은 스테이플섬유 함유량이
85% 미만인 혼방직물로 5515.12-9000(10원)으로 신고함이 타당하나,
스테이플 섬유 함유량이 85% 이상인 5512.19-1000(140원)로 잘못 분류하여
과다환급됨



조치사항

- 추징 및 타업체로 확장심사 실시(2건) ⇒ 관세 1,733,370원

09

철강제 기타 제품의
품목분류 오류

심사 착안

- 수출물품 DIN CUTTING RING



품목번호 및 간이정액환급률 체계

	신고 품목번호	해당 품목번호
구분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관연결구 (7307.29-0000)	철강으로 만든 그밖의 제품 (7326.90-9000)
간이환급률	90원/10,000원	20원/10,000원

- 수출신고서의 품명·규격과 환급신청내역의 품명·규격을 확인한 결과 철강제
기타제품(DIN CUTTING RING)을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관연결구(FERRULE
SET)와 같은 세번으로 수출·환급신청하여 심사한 사례임



주요 오류 내용

- 해당 업체는 수출품목인 FERRULE(철강으로 만든 관연결구), DIN CUTTING RING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등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체
- 두 품목의 세번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세번으로 수출신고를 하고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과다환급 발생



조치사항

- 과다환급된 금액만큼 추징 조치 ⇒ (추징세액) 관세 9,942,900원

II

환급신청인 오류

- 1 비제조물품의 간이정액환급(1)
- 2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의 간이기납증 발행
- 3 비제조물품의 간이정액환급(2)
- 4 간이정액환급 신청인 적격 여부 심사 정보 제공
- 5 비제조물품의 간이정액환급(3)

01

비제조물품의 간이정액환급(1)



심사 착안

- 수출물품 BOARDS
-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규칙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환급을 신청하여야 함. 직접 생산 여부 확인을 위해 제조공정도, 카달로그 등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서류 제출이 어렵다고 답변해 정밀 심사함



주요 오류 내용

- 해당업체는 간이정액환급업체로, 신규 HS로 환급받은 건에 대하여 제조공정 등을 확인하였고, 직접 제조하지 않은 수출물품에 대한 과다 환급 발생



조치사항

- 해당 건 추징 ⇒ (추징세액) 관세 605,290원, 환급가산금 430원



02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의
간이기납증 발행 오류 심사 착안

- 수출물품 자동차 부품(CK GARNISH F/LH 등)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기업도 중소기업자에서 제외되므로 중소기업자 적격 여부를 정밀 심사함

* 2020. 6. 11.부터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기업집단을 중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확대

 주요 오류 내용

- 해당 업체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21.5.1. 신규로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임. '21.5.1.로 대기업에 분류됨에 따라 '21.5.1.이후 양도된 간이기납증에 대해 과다환급 자진신고한 바 있음
- 정밀 심사한 결과, 동 기업집단(○○)은 '17년 9월 이후 줄곧 공시대상기업집단 이었고,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일인 '20. 6. 11. 중소기업자에서 제외되었으며, 업체는 '20. 7. 1. 동 기업집단에 편입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해당기업은 중소기업자에서 제외되므로 기업집단에 편입된 일('20.7.1.) 이후 양도된 간이기납증 추징 필요

 조치사항

- 추징조치 ⇒ (추징세액) 관세 564,720원, 환급가산금 211,980원

03

비제조물품의
간이정액환급(2) 심사 착안

- 수출물품 할로겐 램프(HALOGEN BULBS)
- 해당 업체는 전구를 제조하는 간이정액환급 업체로, 환급내역 중 해당업체 홈페이지에 없는 모델에 대하여 제조여부를 확인한 바, 비제조물품에 대한 과다환급 추징한 사례임

 주요 오류 내용

- 직접 제조하지 않은 수출물품(국내구매물품, 운임 등)에 대한 과다 환급 적발

 조치사항

- 확장심사 실시하여 총 97건 추징
⇒ (추징세액) 관세 27,713,820원, 환급가산금 2,699,280원



04

간이정액환급 신청인
적격 여부 심사 정보 제공 심사 착안

- 수출물품 PARTS FOR BURN-WET SCRUBBER 등
- 간이정액환급 신청인은 중소기업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자여야 하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중견·대기업)의 간이정액환급 적용 가능성이 있어 전국세관으로 확장심사한 사례임

* 관내 기업의 환급신청인 적격 여부 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음

 주요 오류 내용

- 중견기업확인서 발행 기업(중견기업 정보마당 활용)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기업집단포털 활용)을 관세청 환급신청인과 대조하여 간이환급이 부적정한 기업을 추출해 관할세관에 정보 제공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에서 제외(중기법 §2)
⇒ 부당환급이 의심되는 12개 업체, 538백만원 정보 제공

 조치사항

- 전국 세관 정보제공 ⇒ 6개사, 4.9억원 추정(예정)

 특이사항

- 동기간 중소기업확인서 및 중견기업 확인서 중복발행(주업종 매출액 판단 상이)
⇒ 중기부 판단 수용
- 중소기업확인서는 환급신청일이 아닌 수출신고수리일 기준임
- 중소기업 제외 유예기간 중에는 중소기업확인서가 발행됨
- 신청인은 중견기업이나 흡수합병된 중소기업 수출분은 간이환급 가능

05

비제조물품의
간이정액환급(3) 심사 착안

- 수출물품 SCARA ROBOT/ PMMA PELLETS
- 간이정액환급 대상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서에 신고된 원산지가 KRI 아닌 것에 착안하여 비제조물품 과다환급금 추정

 주요 오류 내용

-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하며, 수출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함(환급고시 제31조)

 조치사항

- 확장심사 실시하여 총 2건 추정
⇒ (추징세액) 관세 230,040원, 환급가산금 21,100원



III

수출금액 오류

- 1 용역비용을 수출금액으로 산정한 오류
- 2 환급이후 수출신고 내역 정정(1)
- 3 환급이후 수출신고 내역 정정(2)

01

용역비용을 수출금액으로 산정한 오류



심사 착안

- 수출물품 Dialator product mold
-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신고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하며, 수출물품 규격란에 기술제공료로 보이는 patterns charge가 포함되어 있어 물품가격과 관련 없는 금액을 제외한 순수한 물품가격으로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한 사례임



주요 오류 내용

- 간이정액환급 시 해상운임·보험료, 수출이후 해외 설치비용, 해외출장 소요비용, 특허사용료(몰드로 제작할 제품 관련) 등의 용역비용은 수출금액(FOB)에 포함될 수 없음
- 환급신청 시 수출(FOB)금액에 용역비용이 포함되었으나 공제하지 않고 신고하여 과다 환급 발생



조치사항

- 해당 건에 착안하여 관내 수출기업으로 확장심사 실시하여 23건 수작업선별하여 5건 추정
⇒ (추징세액) 관세 2,033,490원, 환급가산금 64,180원



02

환급 이후 수출신고
내역 정정(1) 심사 착안

- 수출물품 PARTS FOR AUTOMOTIVE
- 환급 후 수출신고 단가를 감액 정정하여 과다환급이 발생됨

 주요 오류 내용

- 해당업체는 자동간이환급업체로, 환급액 지급 후 수출신고내역(단가)을 정정하여 수출금액이 감액되고 과다환급이 발생됨

 조치사항

- 해당 건 추징 ⇒ (추징세액) 관세 66,600원, 환급가산금 60원

03

환급 이후 수출신고
내역 정정(2) 심사 착안

- 수출물품 폴리에스테르직물
- 환급이후 환급에 사용된 수출신고필증의 수출금액이 정정되어 환급심사 선별된 건으로 선별사유를 정밀 심사함

 주요 오류 내용

- 해당 업체는 직물류 수출 이후 간이정액환급 받은 업체임
- 환급에 사용된 수출신고필증 상 수출물품의 단가가 잘못 기재되어 단가정정으로 수출금액이 감액되어 과다환급 발생

 조치사항

- 추징조치 ⇒ (추징세액) 관세 837,720원, 환급가산금 11,720원



IV

소요량 오류

- 1 동일 모델의 원재료 적용 착오
- 2 수출물품 제품식별번호 입력 오류
- 3 환급대상 수입원재료 적용 오류
- 4 단위소요량 과다 산정 및 부산물 미공제
- 5 알루미늄 코팅제의 단위소요량 산정 착오

01

동일 모델의 원재료 적용 착오



심사 착안

- 수출물품 Wind Tower
주요 원재료 cable control외
- 동일물품의 환급액 오류 사례 인지 후 확장심사한 사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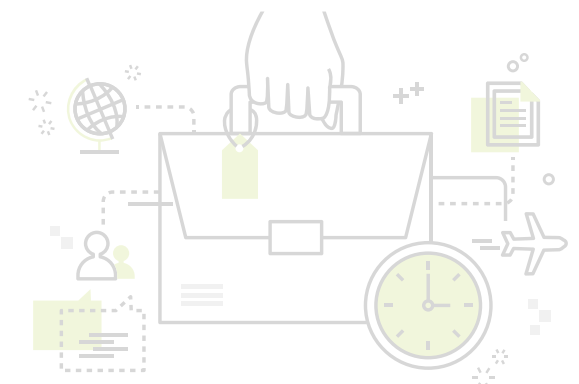
주요 오류 내용

- 해당업체는 수출품목인 풍력발전시설(wind tower for enercon wind for generator)을 수출 후 개별환급 받음(2건)
- 환급신청한 2건이 동일한 모델임에도 환급신청액이 상이하여 소요량 계산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원재료 적용 착오로 인해 환급오류 발생



조치사항

- (추징세액) 관세 137,819,620원, 환급가산금 95,070원



02

수출물품 제품식별번호
입력 오류 심사 착안

- 수출물품 PC RESIN
- 수출신고서의 모델·규격과 환급신청내역의 제품번호를 대조한 결과 제품식별번호가 상이하여 소요량에 착오가 있을 수 있어 심사한 사례임

 주요 오류 내용

- 해당 업체는 수출품목인 PC RESIN을 수출한 후 개별환급을 신청하였으나,
- 환급신청한 건 중 일부 수출품목의 제품식별번호를 오입력하였고 이로 인해 소요량이 잘못 적용되어 과다환급 발생

 조치사항

- 제품식별번호 오입력된 수출물량만큼 추징 조치
⇒ (추징세액) 관세 14,832,960원

03

환급대상 수입원재료
적용 오류 심사 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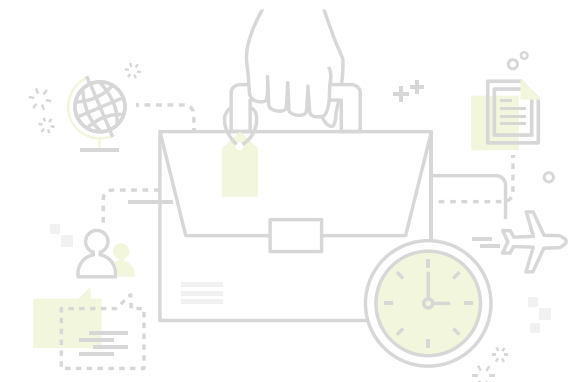
- 수출물품 GLASS SHEET
주요원재료 GLASS SHEET
- 수입 원재료와 수출물품의 특성 및 제조공정 등을 파악하여 해당 원재료로 수출물품 제도가 가능한 지를 판단한 결과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심사한 사례임

 주요 오류 내용

- 해당 업체는 GLASS SHEET를 수입하여, 절단·식각 등의 공정을 거친 후 수출하는 업체임
- 유리의 재질적 특성 및 해당 건의 제조공정 등을 검토해 본 바, 수입물품보다 수출물품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은 불가능할 것에 착안하여 과다환급 적발

 조치사항

- 확장심사 실시하여 총 3건 추징
⇒ (추징세액) 관세 546,890원, 환급가산금 840원



04

단위소요량 과다 산정 및
부산물 미공제

심사 착안

- 수출물품 알루미늄 시트(ALUMINUM SHEET)
- 동종업체와 달리 최근 5년간 소요량 사전심사 및 환급심사 실적이 全無하고 연도별 환급(기납증 포함) 발급건수 및 금액의 편차가 큼



주요 오류 내용

- 해당업체는 알루미늄제품 제조·수출 후 개별환급받는 업체로, 소요량 사전심사 이력이 없고 최근 환급심사를 받은 적이 없음
- 업체에 자료* 요청하여 분석한 결과, 일부 품목의 단위소요량이 과다 산정되었고 부산물 공제가 이뤄지지 않아 과다환급됨

* 생산물품의 투입/생산/부산물량 등 생산부서의 raw data



조치사항

- 해당 건 추정 ⇒ (추징세액) 관세 45,856,030원, 가산금 2,858,050원

MEMO

해당 과다 환

환급금 총액

수출물품

수입액

전환금

기타



01

조정고시 대상 수입원재료의 고시 적용 오류



심사 착안

- 수출물품 POSMAC COIL
- 환급신청한 수입원재료 중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해당 품목이 있을 경우 세율별 물량 등 확인 필요



주요 오류 내용

- 수입원재료 중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표 1, 2에 해당하는 품목이 있을 경우 고시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을 환급 적용 신청하여야 하나
- 해당업체는 별표2 해당 품목(7502.10-9000)이 있음에도 고시 제7조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지 않고 환급신청함



조치사항

- 확장심사 실시, 2건 추가 수작업선별하여 총 3건 추징
⇒ (추징세액) 관세 49,079,890원, 환급가산금 24,180원



VI

기타 오류

- 1 덤프방지관세 공제비율 신고하였으나 공제 안 함
- 2 환급에 사용된 수입신고서 정정으로 과다환급 발생(1)
- 3 수출신고 물량과 환급신청 물량의 불일치(1)
- 4 재수입된 수출물품을 환급에 사용하여 과다환급 발생
- 5 환급에 사용된 수입신고서 정정으로 과다환급 발생(2)
- 6 환급에 사용된 수입신고서 정정으로 과다환급 발생(3)
- 7 환급에 사용된 수입신고서 정정으로 과다환급 발생(4)
- 8 수출신고 물량과 환급신청 물량의 불일치(2)
- 9 원상태 환급의 수출 품명과 원재료 품명 불일치
- 10 간이징액환급률표 적용 제외 물품(수탁가공)
- 11 수입원재료 고세율 정정으로 인한 총당 조치
- 12 수입원재료 단위 세액 계산 착오

01

덤핑방지관세 공제비율 신고하였으나 공제 안 함



심사 착안

- 수출물품 100% Polyester woven fabric plain dyed
- 환급신청서(수입원재료, 병)에 공제비율이 있고, 공제비율이 신고 내용대로 환급금 계산 시 공제되었는지 확인 필요



주요 오류 내용

- 수입원재료 중 덤프방지관세(5%, 기본세율 8%) 부과 원재료가 있을 경우, 환급신청서(수입원재료, 병)에 공제구분 및 비율을 신고하고 비율을 공제하여 환급받아야 함(관세환급특례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4조)
- 해당업체는 공제구분*란에 A(지급제한비율, 38.46%)라고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지급제한비율을 공제하지 않고 환급신청함

* A: 지급제한(덤핑, 보복, 상계관세 적용 물품), B: 부산물(부산물내역서 작성), C: 부산물내역서 작성 생략



조치사항

- 해당 건 추징 ⇒ (추징세액) 관세 143,980원, 환급가산금 20원



02

환급에 사용된 수입신고서
정정으로 과다환급 발생(1) 심사 착안

- 수출물품 Fuses(원상태수출)
- 환급이후 환급에 사용된 수입신고필증이 FTA협정세율 사후적용, 단가변경 등의 이유로 감액 경정될 시 수입원재료의 환급금계산이 정확한지 확인한 사례임

 주요 오류 내용

- 해당업체는 수입물품을 원상태수출하면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안에 FTA협정세율(RCEP) 사후적용을 신청함
- 환급에 사용된 수입신고필증이 FTA세율 적용으로 감액경정되어 과다 환급 발생

 조치사항

- 수입원재료의 관세 차액 추징
⇒ (추징세액) 관세 278,820원, 환급가산금 5,700원

03

수출신고 물량과 환급신청
물량의 불일치(1) 심사 착안

- 수출물품 INSULATING OIL(원상태수출)
- 원상태 환급으로, 수출신고 물량과 환급받으려는 원재료의 물량이 동일한 지 심사한 결과 물량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착안한 사례임

 주요 오류 내용

- 해당 업체는 INSULATING OIL을 원상태 수출하면서 수입신고한 물량의 일부가 파손되어 파손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만 원상태로 수출하였으나 환급신청 시 수입 물량 전량 환급신청함

 조치사항

- 차액 물량의 환급금 추징 조치 ⇒ (추징세액) 관세 27,830원



04

재수입된 수출물품을 환급에 사용하여 과다환급 발생

 심사 착안

- 수출물품 PCB
주요원재료 구리의 박 등
- 환급대상 수출은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수출 후 재수입면세로 재반입된 수출물품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해당 건은 종합감사 사전분석 사항으로 심사함

 주요 오류 내용

- 수출 후 재수입면세로 재반입된 수출신고서를 관세환급특례법 환급에 사용하여 과다환급 발생

 조치사항

- 해당건 추징 ⇒ (추징세액) 관세 204,720원, 환급가산금 15,270원

05

환급에 사용된 수입신고서 정정으로 과다환급 발생(2)

 심사 착안

- 수출물품 태양광 모듈
주요원재료 강화 안전유리
- 관세환급특례법 환급에 사용된 수입신고서의 경정 등으로 세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기 환급된 내역 중 과다환급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 착안함

 주요 오류 내용

- 환급에 사용한 수입 원재료의 수입세액(세율)의 변동으로 과다환급이 발생됨

 조치사항

- 해당건 추징 ⇒ (추징세액) 관세 197,599,190원, 환급가산금 19,876,430원



06

환급에 사용된 수입신고서
정정으로 과다환급 발생(3) 심사 착안

- 수출물품 태양광 모듈
주요원재료 강화 안전유리
- 환급에 사용한 수입신고서를 정정할 경우 과다환급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환급에 사용한 행을 삭제·이동할 경우 시스템상 과다환급 여부를 체크하지 않으므로 란 사항의 이동을 유념하여 심사해야 함

 주요 오류 내용

- 환급에 사용한 수입신고서의 행을 삭제하고 란 분리함으로써, 삭제된 행은 과다환급이 발생되고, 추가된 란은 추가환급 대상임
- 삭제된 행의 당초 환급금을 추정하고 동일 사안으로 수입신고 정정된 건으로 확장심사함

 조치사항

- 확장심사 실시하여, 과다환급금 추징 조치
⇒ (추징세액) 관세 3,645,970원, 환급가산금 364,830원

07

환급에 사용된 수입신고서
정정으로 과다환급 발생(4) 심사 착안

- 수출물품 Tank asm-fuel
주요 원재료 rubber pad
- 환급이후 환급에 사용된 수입신고필증이 FTA협정세율 사후적용, 단가변경 등의 이유로 감액경정될 시 수입원재료의 환급금 계산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함

 주요 오류 내용

- 해당업체는 수입물품을 제조·가공 후 국내 수출자 한○○○에 양도(기납증 발급) 수출하였으나 수입신고수리이후 FTA(한중FTA)협정세율 적용으로 감액경정됨
- 환급에 사용된 수입신고필증이 감액경정되어 과다 환급 발생

 조치사항

- 수입원재료의 경정 관세만큼 추징



08

수출신고 물량과
환급신청 물량의 불일치(2) 심사 착안

- 수출물품 ENGINE OIL FOR MARINE USE
- 환급신청서의 수출물품 환급물량이 수출신고서의 순증량 합계를 초과하여 정밀 심사한 사례임

 주요 오류 내용

- 환급신청물량을 수출신고서의 란별 순증량 합계보다 초과하여 신청함으로써 과다환급 발생

 조치사항

- 과다 환급된 물량만큼 추징 조치 ⇒ (추징세액) 관세 163,290원

09

원상태 환급의 수출 품명과
원재료 품명 불일치 심사 착안

- 수출물품 화이트카본(NIPSIL E-1009, 원상태수출)
- 원상태 환급의 경우 수출물품의 품명·규격과 환급받으려는 수입원재료의 품명·규격이 동일하여야 하나 품명이 상이해 심사함

 주요 오류 내용

- 해당 업체는 수출물품 품명 NIPSIL E-1009을 원상태 수출하면서 수출물품과 다른 수입물품 품명 NIPGEL AZ-260을 환급신청함

 조치사항

- 과다 환급된 물량만큼 추징 조치
⇒ (추징세액) 관세 33,760원, 환급가산금 20원



10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제외 물품(수탁가공) 심사 착안

- 수출물품 OTHER OPTICAL INSTRUMENTS AND APPLIANCES
- 해외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반입된 수입원재료의 가공물품 수출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음(환급고시 제33조 제3호)

 주요 오류 내용

-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대상 업체 여부와 상관없이 수탁가공물품은 간이정액환급 적용 제외 대상임

 조치사항

- 해당 건 추징 ⇒ (추징세액) 관세 1,187,150원, 환급가산금 36,200원

11

수입원재료 고세율
정정으로 인한 충당 조치 심사 착안

- 수출물품 NF3
- 환급이후 개별환급에 사용한 수입신고필증을 고세율로 수정신고함에 따라 과다환급·추가환급 발생으로 충당한 사례임

 주요 오류 내용

- 해당 업체는 기업심사 결과 환급에 사용한 수입신고필증의 신고물품을 란 분리*하여 수정신고하였음
* (전) 1란 전체물량 1.1% → (후) 1란 일부물량 1.1%, 2란(추가) 잔여물량 3.3%
- 수정신고 이후 1란은 환급가능물량 감소로 과다환급되고, 2란은 추가환급해야 하기에 과다환급 자진신고로 충당 신청 후 1란 추징액을 2란 추가환급금으로 충당한 사례임

 조치사항

- 추징 조치 ⇒ (추징세액) 관세 3,386,430원



12

수입원재료 단위세액
계산 착오

심사 착안

- 수출물품 Parts for bicycles
- 수입신고필증의 모델·규격 사항에 물품 외 기타비용이 별도 행으로 표기된 수출용원재료의 경우 신청세액이 잘못 계산될 우려가 있어 세액 계산에 유의한 사례임



주요 오류 내용

- 자율시정감사에 따라 정보분석도구를 활용해 오류사항을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가 환급에 사용한 수입원재료 세액이 수입신고필증의 단위당 세액보다 큼
- 신고인 확인 결과, 환급프로그램의 raw data 입력 시 모델·규격 상 수입물품 외 별도의 행에 표기된 기타비용(과세가격 미포함)의 입력을 누락해 단위당 세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발생한 오류임



조치사항

- 해당 건 추정 ⇒ (추징세액) 관세 54,180원

MEMO

환급 초보 탈출, 전문가 양성을 위한



발행일 2023년 12월

총괄 대구본부세관장 주시경

집필 대구본부세관 납세지원과장 신태섭

대구본부세관 김영희, 조남희, 우정화, 예민경, 남지혜, 손경하

(대구시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5층

Tel 053. 230. 5313 Fax 053. 230. 5636)

울산세관 나두영, 이상호, 김은경

구미세관 권신희, 남정웅, 최선아

포항세관 이동수, 편정희, 엄영진

디자인·인쇄 모모디자인(주)(Tel 053.639.5008)
